

화재보험 요율과 FILK 인증품의 할인 제도



박 영 수
(보험개발원 가계보험부 차장)

1. 머리말

금번, 화재보험에 있어서 소화설비의 주요 구성품과 건물 내장재를 FILK에서 인증한 우수 제품을 사용한 경우 최고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FILK 인증품 할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94.8.16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선 계약자에 대하여 화재보험료의 부담을 줄였다는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화재보험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한 계약물건의 위험실태를 정확히 요율에 반영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있는 바, 이는 화재위험이 높은 물건과 낮은 물건에 대한 위

험 분류의 차별화를 통한 보험료 부담의 차등화로 실현되며, 요율 산정의 원칙으로 이론규정이 되어 있다.

굳이 요율 산정의 근간을 언급치 않더라도 방화상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실의 위기는 경감될 것이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보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산업 또한 가까운 장래에 가격 자유화 시대를 맞이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환경 변화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요율 구조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2. 화재보험 요율체계의 분류 및 주요국의 사례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구조를 요율체계라 하며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등급요율(class rate)과 성과요율(merit rate), 개별요율(individual rate)등 3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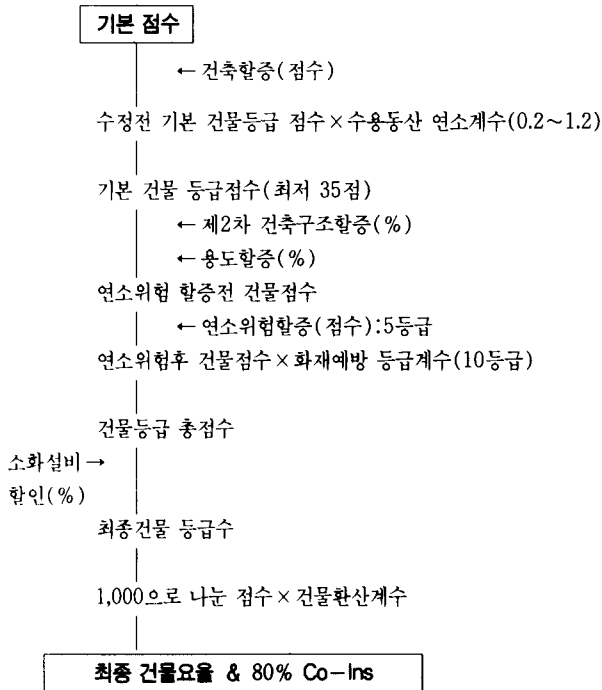
등급요율은 계약물건의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등급마다 요율을 tariff화하여 적용 요율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요율 구조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료 계산이 신속 용이한 반면, 요율 구분상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위험기준의 폭을 넓게 설정하는 경우는 위험 편차가 크게 되므로 평균치에서 벗어난 계약물건의 경우에는 위험실태에 부합한 적정 요율을 반영하기가 어렵게 된다.

성과요율은 등급 요율 체계에서 산출된 요율을 기준 요율(key rate)로 정하고, 손해율(loss ratio)이나 위험요인(hazard)에 따라 기준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최종요율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험 평가 측면에서 보면 성과요율은 계약물건 위험실태를 2차에 걸쳐 평가한 결과가 된다. 동 요율은 요율의 적정성 및 체계의 복잡성에 있어서 등급요율과 개별요율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개별요율은 요율 산출표(rating schedule)를 이용하거나 요율산정자의 판단에 의한 방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요율 산출표에 의하는 경우 등급요율이나 성과요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위험 요소를 측정하여 요율을 산출하므로 동일 요율이 적용되는 위험집단이 성립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물건 1요율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복잡

(표 1) Commercial Fire Rating Schedule



한 요율 구조인 반면, 가장 정확한 한 요율이 산출되는 제도이다.

화재보험에 있어서 소위 보험 선진국은 물건의 규모나 위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SO(주) 요율 program이 대표적이다.

이 program에 의하면 주택물건과 소규모 상업용·비제조업체 물건의 경우 위험평가가 단순한 등급요율이며, 기업형 상공 물건과 발전소·석유정제공장 등 특수한 위험을 갖는 물건은 개별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ISO의 개별요율인 CFRS(Commercial Fire Rating Schedule)는 총 14단계의 요율 산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정별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개의 위험 측정 요소를 반영

하여 최종요율이 결정된다.

우리와 요율체계가 유사하다고 흔히 말하는 일본의 화재보험 요율은 등급요율과 성과요율로 대별된다. 성과요율은 등급요율을 수정하는 제도로서 기업형 물건에 대한 특정요율 제도와 특수계약 제도가 있다. 특정요율은 일반, 공장, 창고 물건중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대개 20억엔~25억엔 이상의 규모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합 7종류가 있고, 특수계약 제도는 석유정제공장, 정유소, LNG기화 공장 등 특수 위험 형

註)

ISO(Insurance Service Office) : 미국의 대표적인 요율산출단체로서 1970년 유사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음.

태의 물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요율체계이다.

3. 우리나라 화재보험 요율 구조의 현상과 당면 과제

우리의 화재보험 요율 구조는 사용되는 약관의 종류에 따라 국문요율과 영문요율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문요율은 등급요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 일반, 창고물건은 등급요율이며, 공장물건의 경우는 1993년 5월에 우량물건 할인제도가 시행되어 때늦은 감은 있으나 비로소 성과 요율로 전환되었다.

국문요율의 근거가 되는 등급요율에 있어서 최종요율은 기본요율에 할인·할증요율을 가감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요율구조에 반영된 위험측정 요소는 기본요율 2가지(등지, 건물구조 등)를 비롯, 할인·할증에서 14가지 등 도합 16종으로 위험 평가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요율구조이다. 공장물건의 경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성과요율 도입으로 등급요율을 보완하고 있다.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 300만불 이상의 계약에 사용 가능한 영문요율은 해외 재보험 사업자에 요율산출을 의뢰하여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영문요율 사용으로 인한 가격체계의 이중구조 현상은 화재보험 시장에 적지않은 문제점과 폐단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일 위험물건에 대한 이중가격의 존재는 다름아닌 비원칙인 문제이다. 원보험 요율은 원보험회사가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국제 관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표 2> 일본의 특정요율 제도

종류	제정일	주요 자격 요건
일반물건	'79. 4. 1	보험가입금액:15억엔 이상 손해율:30% 미만 건물구조:특급, 1급
공장물건	'70. 5. 15	보험가입금액:20억엔 이상 손해율:40% 미만 구조비:60% 이상
석유화학공장	'75. 4. 1	보험가입금액:20억엔 이상 손해율:40% 미만
저유소	'79. 4. 1	상동
전기사업자	'71. 4. 1	상동
창고물건	'72. 4. 1	건물구조:특급, 1급 손해율:40% 미만

<표 3> 국·영문 보험료 구성비(FY' 92)

구분	국 문		영 문		총 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주택	80	2.9	0.2	-	80.2	2.9
일반	583	21.0	27	1.0	610	22.0
공장	1,022	36.9	999	36.0	2,021	72.9
창고	60	2.2	-	-	60	2.2
계	1,745	63.0	1,026.2	37.0	2,771.2	100.0

그 실례를 찾기 어렵고, 더우기 이종구조에서 오는 적용상의 혼란과 영문요율의 불투명성은 간과될 수 없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국문요율은 그간 건물규정, 등지체계 및 할인·할증 등을 보완·개정하였고, 최근에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성과요율을 도입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선진국의 요율체계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시장 개방은 화재보험에 있어서 국·영문 요율의 이종구조 현상의 근원적 제거와 더불어 적정요율 수준의 제시를 전제한국문요율 체계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할인·할증 등의

기준 요율 체계의 보완과 기업형 물건의 요율체계를 성과요율이나 개별요율로 특화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FILK 인증품 할인제도의 도입 의의

방화안전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보험회사 등 이해 관계자 모두를 위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품질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공인 시험 연구기관의 품질인증 제도가 필요하겠고, 제조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품질인증을 제3의 기관으로부터 획득함으로써 판매 경쟁력상 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인증제도를 통한 우수제품의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재해예방 및 손실경감에 의한 경영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국문요율에 도입된 FILK 인증품 할인규정은 우수 방화제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경감되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merit 제도이다.

동 제도의 시행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가벼이 한 것이나, 이는 요율 산정상 화재위험이 낮은 물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물건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험의 공정한 차별화를 기한 것이고, 요율체계 제도상의 보완이다. 특히, 국내 손보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FILK)는 국내 손보사의 출현에 의해 국내 민간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방화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등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운영되어 왔다.

동 시험연구소는 그간의 기술과 경험축적을 바탕으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외국 유수기관의 지정시험 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

FILK 인증기준은 1차적으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시험기준에 의거 내화성능을 인정받고 또한, 그 기준이 UL 등 외국 유사기관의 관련기준과 견주어 볼 때 대등한 수준이므로 FILK 인증품이 우수제품이라고 하는데는 이견의

소지가 없는 듯하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방화안전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UL·FM, 영국의 LPC, 독일의 VdS 등 세계적 품질인증 기관은 손해보험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인증한 방화 제품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요율에 직접 반영하는 요율적용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대개 우리나라의 통칙에 해당하는 일반 조건에 이들 인증제품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명시규정이 있고, 건축부재, 소화설비, 내장재 등 방화관련 제품을 인증품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ISO CFRS 요율서는 건물 최종등급의 점수를 판정하는 과정에 이들 요인이 반영하고 있으며 소화설비 할인의 경우 인증품의 전제 조건으로서 일정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VdS 인증품을 사용한 소화설비 시설은 설비별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할인율을 정하고 있다. 외국의 인증제도와 보험요율의 밀접한 연계성을 보더라도, FILK의 인증품 할인율 제도의 도입 의의는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FILK 인증품에 대한 할인율 도입의 작은 계기가 우수방화 제품 보급을 확대, 실현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재에 기여하고, 관련 제품 생산업체의 기술 향상과 보험 수지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할 때, 보험계약자, 사업자, 생산업체 모두에게 큰 결실로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5. 맺는 말

오늘날 화재보험 요율체계는 국·영문 요율의 이원화 현상에서 빚어지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국문요율 체계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가격 자유화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험요율 자유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화재보험은 95년에 범위 요율을 도입하고 2년후인 97년에는 권고요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범위요율은 기존 요율 수준의 일정 범위폭 내에서 적용요율의 결정을 각 보험사의 자유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며, 권고요율은 요율 산출단체가 산정한 요율을 각 보험사가 어떤 룰에 의하여 임의 수정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자유화 체계하에서도 적정요율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요율 산정상의 원칙은 불변일 것이며, 대내외적인 경쟁의 심화현상은 더욱 정밀한 요율체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화재보험의 본격적 자유화의 진입까지는 불과 2년 남짓한 준비기간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다가올 보험환경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재보험으로서의 요율의 이원화 현상의 점진적 제거와 더불어 국문요율 체계의 선진화와 아울러 FILK 인증품 할인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어 화재보험에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